

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

1 목 적

-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할 「'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」의 평가항목 적용 기준 수립 등을 심의·의결하고자 개최함

2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 2023. 1. 27.(금) 13:30 ~ 15:30
- (장 소) 직업능력심사평가원 (서울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202호)
- (세부일정)

시 간	주요내용	담 당
13:30~13:40(10분)	-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	간사, 위원장
13:40~14:10(30분)	- 평가기준 세부항목 등 안건 설명	간 사
14:10~15:30(80분)	- 안건 심의·의결	전 원

3 심의 · 의결사항

구분	안건내용	결과	위원회 의결사항 요약									
안건	'24년 적용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	일부 수정 동의	<p>- 운영체계 축소 및 업무성과 강화 중심으로 개편한 평가 지표 및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은 원안동의하나,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</p> <p>① [B.1.②]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 : 평가기준을 2가지 구분 기준 → 3가지로 세분화</p> <p>[기존 평가기준]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지도여부</th><th>면담결과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TBM 등 실시여부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보건수칙 지도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지도여부	면담결과	TBM 등 실시여부			보건수칙 지도		
구분	지도여부	면담결과										
TBM 등 실시여부												
보건수칙 지도												



[수정 평가기준]

구분	지도여부	면담결과
TBM 등 실시여부		
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근로자 전달·공유 여부		
보건수칙 지도		

② [B.1.③]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

: 세부 판단기준 중 기관의 기술지도 및 조언 지도를 확인하고,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개선한 경우 인정하는데 현실성 있게 “개선여부” → “재지도”로 변경

[기존 세부 판단기준]

확인사항	지도여부	개선여부
상태보고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은 개선결과로 보고됨		
⋮		



[수정 세부 판단기준]

확인사항	지도여부	재지도여부
상태보고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은 개선결과로 보고됨		
⋮		

③ [C.1.①] 업무상질병 감소,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

: 기존 평가기준은 업무상질병을 감소시켜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으므로, 평가기준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 비율에 따른 **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**

※ 다만,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하므로 향후 지역별 업무상질병 만인율과도 비교하여, 전국적으로 상대평가하는 게 나올지 지역별로 상대평가하는 게 나올지 확정 필요

[기존 평가기준]
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
업무상질병 만인율 100% 이상 감소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1.0
업무상질병 만인율 80% 이상 ~ 100% 미만 감소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8
업무상질병 만인율 60% 이상 ~ 80% 미만 감소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6
업무상질병 만인율 40% 이상 ~ 60% 미만 감소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4
업무상질병 만인율 40% 미만 감소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2



[수정 평가기준]
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
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상위 20%인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1.0
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상위 40%인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8
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상위 60%인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6
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상위 80%인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4
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상위 80% 초과인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0.2

- 개편 평가지표(안) 중 **3가지 지표에 대한 기관의 의견은 모두 불수용**

① [B.2.①]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

[기관 의견]

: 현재 평가의 사후지도 대상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(D₁, D₂, D_N) 및 직업병 요관찰자(C₁)인데,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(D₁, D_N) 및 직업병 요관찰자(C₁)만 사후지도 대상으로 선정 요청

☞ 법적으로 모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지도를 해야하기도 하며, 현재는 실시한 사후지도가 일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것인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하여 **기존대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평가 ⇒ 불수용**

② [B.2.⑤]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

[기관 의견]

: 현재 평가의 사후지도 대상은 고혈압, 당뇨병 기저 질환이거나 D₂ 또는 D_N 판정받은 근로자인데, D_N 판정받은 근로자는 B.2.①와 중복되므로 제외 요청

			<p>☞ 평가기준으로만 보면 B.2.①에서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지도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, 실제 평가 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과 같은 경우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해당 질환자는 B.2.⑤에서 선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기존대로 평가 ⇒ 불수용</p> <p>③ [C.1.①] 업무상질병 감소,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[기관 의견]</p> <p>: 현재 평가의 산입대상은 업무상질병(진폐, 소음성난청 등 만성질환 제외), 밀폐공간 질식재해 이나, <u>업무상 질병 부분에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추가 요청</u></p> <p>☞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주요 역할로 사료되므로, 기존대로 평가 ⇒ 불수용</p>
--	--	--	--